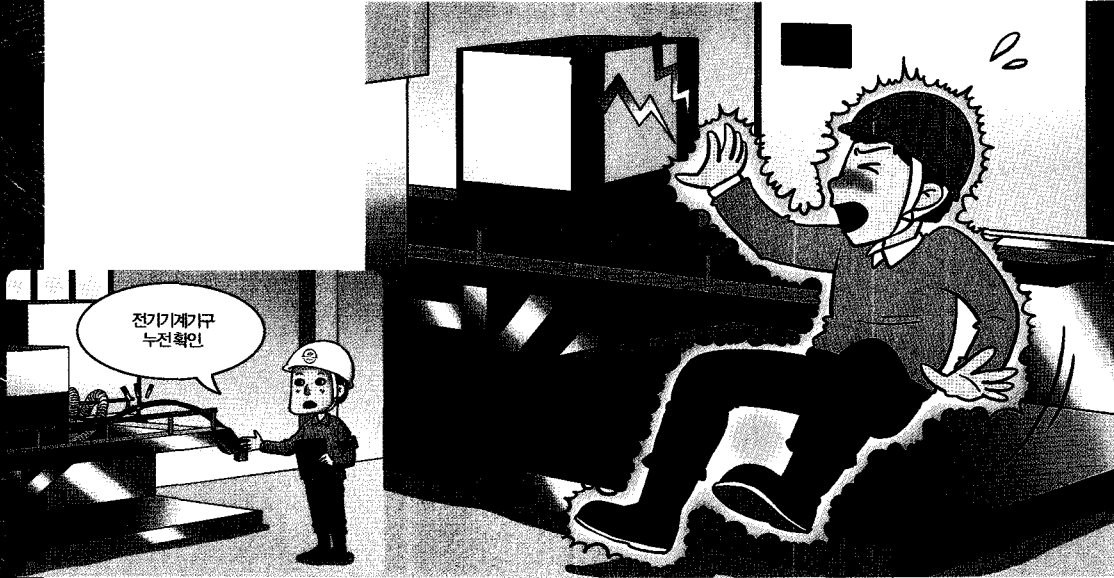


고주파 절단기 누전으로 인한 감전

*업종 : 금속제품제조업 | 생산품 : 자동차용 스프링 | 기인물 : 고주파절단기 | 재해유형 : 감전 |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



1. 재해개요

야간근무 교대 후 소재 절단 준비작업 중 누전되는 고주파 절단기에 신체가 접촉되어, 감전으로 쓰러짐. 주변 근로자가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함.

인 안전점검 실시

- (2) 누전위험이 있는 작업시 절연보호구 착용
- (3) 교대작업시 특이사항 전달
- (4) 작업안전수칙 부착 및 준수토록 관리감독 철저

2. 재해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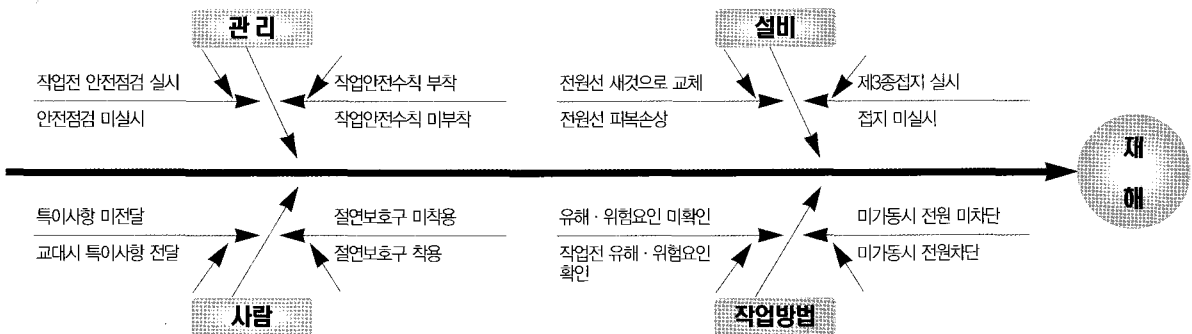
- (1) 전기기계기구(설비)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미실시
 - 접지저항 측정미실시, 접지상태 미확인, 전원선 피복상태 미확인
- (2) 절연보호구 미착용
- (3) 교대작업시 특이사항 전달 미실시
- (4) 작업안전수칙 미준수

4. 법 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
- 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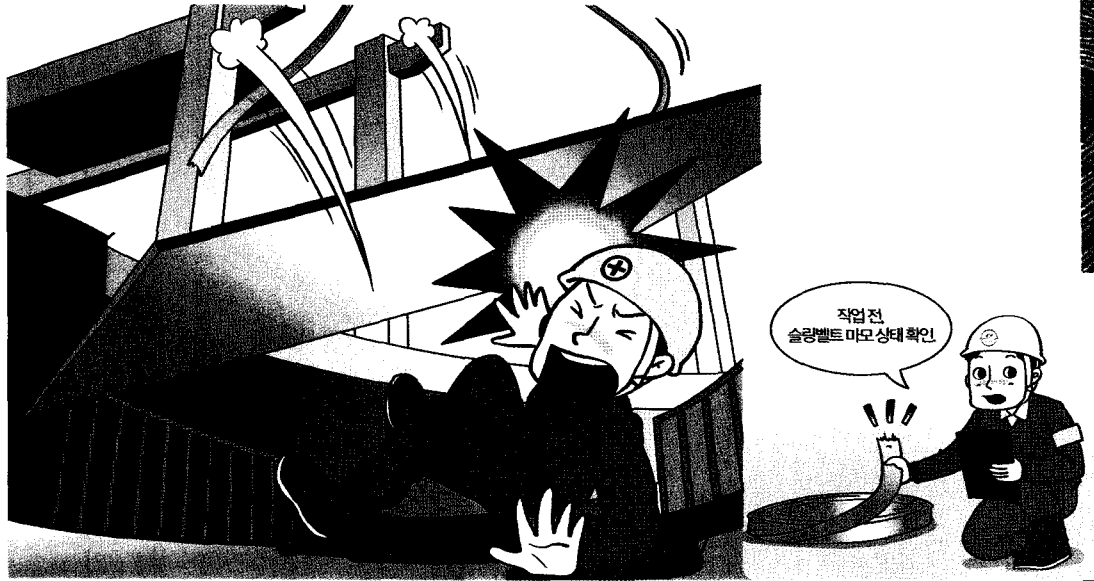
3. 예방대책

- (1) 전기기계기구(설비)의 누전유무, 접지상태 확인 등 정기적



선박 스틸 시트 선적 중 슬링벨트 파단으로 낙하

* 업종 : 항만하역업 | 생산품 : 항만 물품하역 | 기인물 : 슬링벨트 | 재해유형 : 낙하 |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, 물적 500만원



1. 재해개요

선박에 설치된 갠트리 크레인으로 스틸시트 선적을 위해 육상에서 줄걸이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끊어지며 스틸시트가 낙하하여 아래서 작업하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함.

- (3) 슬링벨트와 스틸시트가 닿은 부분에 보강조치 실시
- (4)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및 주지
- (5) 관리감독자의 현장 관리감독 철저

2. 재해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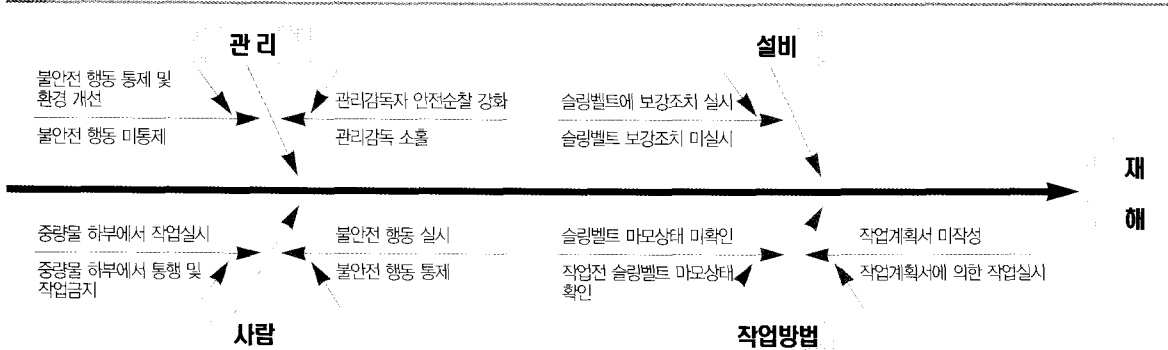
- (1) 작업전 슬링벨트 마모상태 미확인
- (2) 중량물 하부에서 작업실시
- (3) 슬링벨트와 스틸시트가 닿는 부분에 보강조치 미실시
- (4)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
- (5)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소홀

4. 법 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
- 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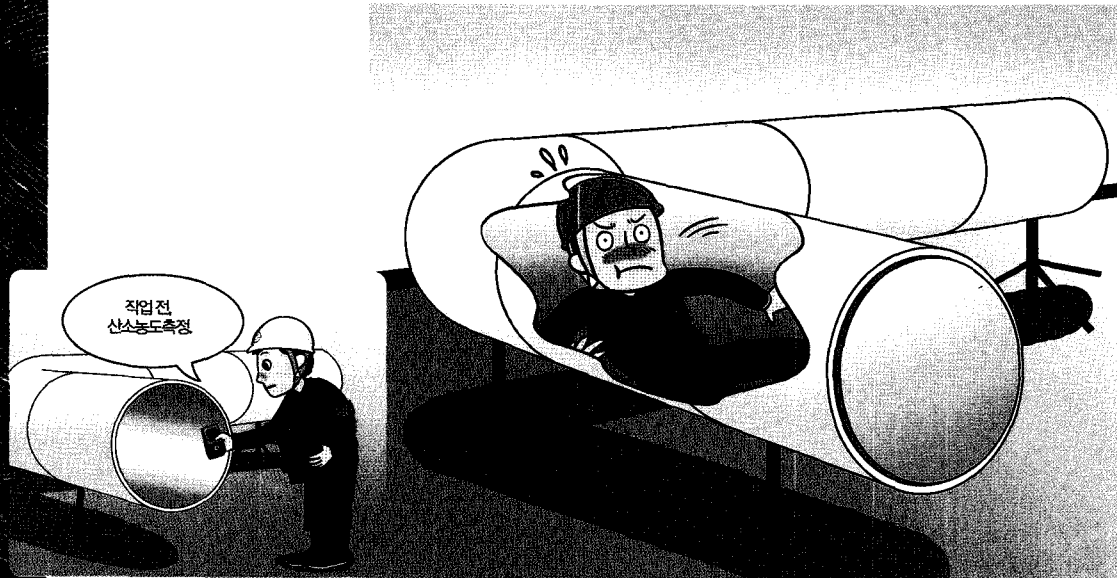
3. 예방대책

- (1) 작업전 슬링벨트의 마모상태 확인
- (2) 중량물 하부에서의 통행 및 작업금지



배관내에서 용접 확인작업 중 질식

*업종 : 선박구성부품제조 | 생산품 : 선박의장(LNG선) | 기인물 : 유니트 배관 | 재해유형 : 질식 |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



1. 재해개요

작업종료 후 작업현장을 정리하던 중 선박용 메니폴더 유니트 제품(배관) 속에서 의식이 없는 피재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. 피재자는 용접 후 용접부분을 확인하고자 아르곤이 충전되어 있는 제품(유니트 배관)속으로 들어가 질식된 것으로 추정됨.

2. 재해원인

- (1)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미 실시
- (2) 개인보호구 이상여부 미확인
- (3) 작업지휘자 미배치
- (4) 특별안전보건교육 미 실시

3. 예방대책

- (1) 밀폐공간 작업전 환기 조치 및 산소농도 측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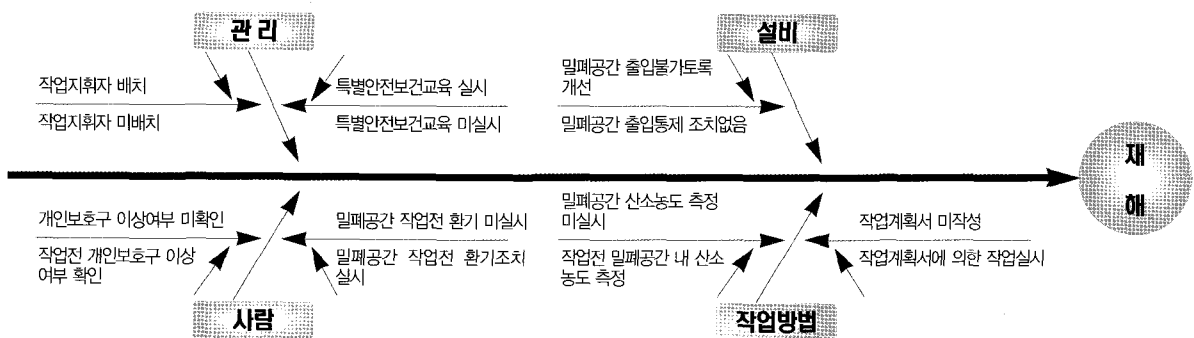
- (2) 개인보호구 이상여부 확인

- (3)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실시 및 작업지휘자 배치
- (4)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

4. 법 위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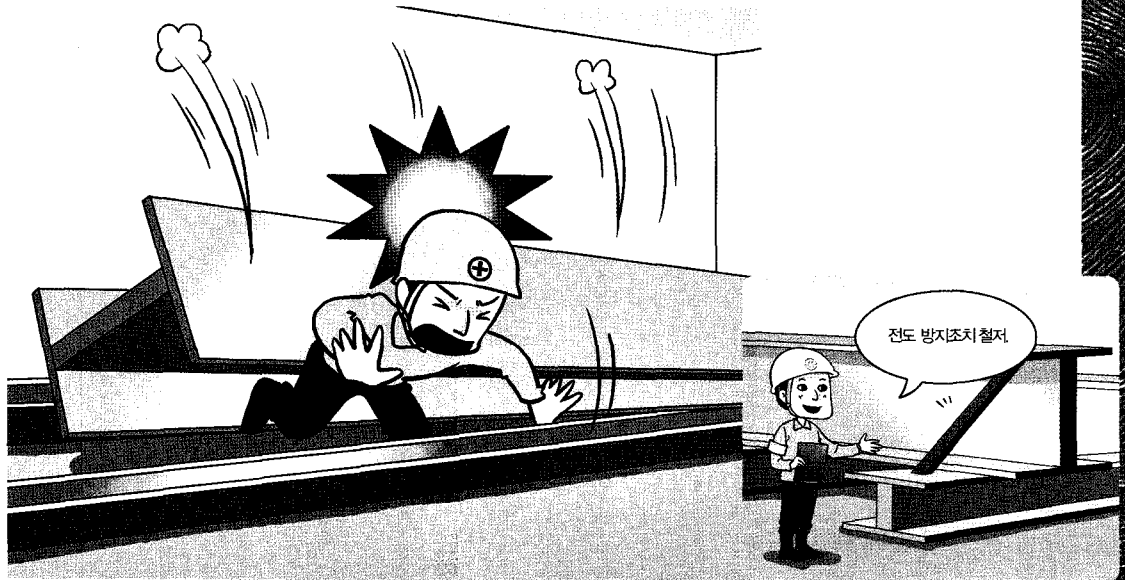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

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 실시.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H형강 전도로 협착

*업종: 건설 | 생산품: 건축 철골 | 기인물: H형강 | 재해유형: 협착 |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



1. 재해개요

옥외 불안정하게 야적되어있던 H형강을 옥내 작업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버팀대, 쇄기 등의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소한 H형강사이로 들어가 묶음용 소둔선을 망치로 절단하던 중 H형강이 피재자 쪽으로 전도되며 협착되어 사망함.

2. 재해원인

- (1) H형강의 전도방지조치 미실시
- (2) 야적시 무너짐 위험이 있는 상태로 불안정하게 적재
- (3) 협착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실시
- (4) 불안정한 방법으로 소둔선 절단

3. 예방대책

- (1) H형강 적재물 인출시 전도방지조치 실시
- (2) 자재, 제품 적재시 무너짐 위험이 없도록 적재

- (3)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금지
- (4) 안전한 방법으로 소둔선 절단

4. 법 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
- 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